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)

1. 계약목적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,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
- ④급여계약 체결시 <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>를 반영하여 작성한다.

2. 계약기간

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<장기요양인증서>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.

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또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, 대상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될 수 있다.

③대상자가 본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, 육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가.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거나 계약서를 작성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등급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의논하여 재계약을 한다.

다.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라.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후 각 각 한부씩 보관한다. 또는 유선 안내 후 SNS 문자발송 하고 전자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마. 매월 <서비스 관한사항>를 작성해 대상자의 가정에 전달한다.

3. 월 이용료

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/100(=15%)와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[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60% 40%와 비급여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).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.

4.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)

②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“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”과 같다. 상기 자(이하 “갑”, “을”이라 한다)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5.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권 리	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대상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의 무	① 서비스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 [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당하지 못할 사유발생시]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6.계약의 해제: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대상자가 사망 시
- ②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
- ④성폭력 및 성희롱의 행동을 하였을 때
- ⑤폭력성, 배회성 또는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자로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(예:전염병)